

광주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545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임승현, 김제현, 김연정, 추은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차승주, 조가연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7.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2. 3. 선고 2020가단6116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 2020. 6. 12. 접수 제6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 C은 E조합과 대한주택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각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위 각 대출기관에 제공하였다.

나. C이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위 각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2012. 3. 12. E조합에 3,135,813원을, 대한주택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3,038,340원을 각 변제하여 그에 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57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8. “C은 원고에게 26,690,463원 및 그 중 26,174,153원에 대하여는 2012. 6. 11.부터 2013. 3. 1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6. 8. 확정되었다.

라. C의 부친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7. 11. 20. 사망하였다. 피고와 C을 포함한 D의 상속인들은 2020. 6. 1. 상속재산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 6. 12. 접수 제6363호로 2017. 11.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C의 법정 상속지분은 2/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 C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C의 사해의 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만 86세의 고령이고 무학력자로서 C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는 이상

C의 채무에 대하여 알 수 없고, C이 피고에게 채무상태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사해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가 한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40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비록 C이 자신의 채무 내역을 말해주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의 모친으로서 C의 전반적인 경제적인 형편 등 제반 상황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인적 관계가 있는 점, C에게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연령과 거주지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해의사 추정을 깨트릴만한 선의에 관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17 지분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각 2/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그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만, 판사 유상호, 판사 송인경

목록(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장흥군 대 337㎡

2. 전라남도 장흥군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장흥군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83.00㎡

부속건물

목조시멘기외지붕 단층주택

17.50㎡

벽돌조 스투트지붕 단층창고

27.10㎡

3. 전라남도 장흥군 대 671㎡

4. 전라남도 장흥군 답 2016㎡

5. 전라남도 장흥군 답 962㎡

